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 금지된 직장 차별 및 괴롭힘

캘리포니아 민권부(CRD)는 귀하의 실제 또는
인지된 내용에 근거하여 고용 시 불법적인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합니다:

- 혈통
- 연령(40세 이상)
- 피부색
- 장애 (신체적, 발달적, 정신 건강/정신적, HIV 및 AIDS)
- 유전 정보
- 성별 표현
- 성 정체성
- 결혼 여부
- 의학적 상태 (유전적 특성, 암 또는 암의 기록 또는 병력)
- 군인 또는 재향 군인 신분
- 국적(언어 제한 및 미등록 이민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지 포함)
- 인종(머리결, 헤어스타일 포함)
- 종교(종교적 복장 및 몸단장 관행 포함)
- 생식 건강 의사결정
- 성별/젠더(임신, 출산, 모유 수유 및/또는 관련 의료 상태 포함)
- 성적 지향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 금지된 직장 차별 및 괴롭힘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과 그 시행 규정은 직장에서의 시민권을 호합니다.

괴롭힘

- 이 법은 직원, 지원자, 무급 인턴, 자원봉사자, 독립계약자 등을 누구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및/또는 관련 의료 상태에 따른 성희롱, 성별 괴롭힘, 성희롱 등 위에 나열된 모든 특성에 따른 괴롭힘 금지가 포함됩니다.
- 모든 고용주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성희롱에 적용되는 성격, 불법성 및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와 공공 고용주는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포함하여 직원들한테 성희롱 예방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차별/합리적인 시설

- 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와 공공 고용주가 고용, 승진, 급여, 혜택, 고용 조건, 해고 및 기타 고용 측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에 나열된 보호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직장에서의 언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언어 제한 및 위반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지원자나 직원이 운전 면허증이나 미 등록자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나 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준수하는 부분인 종교적 의복, 보석 또는 공예품, 헤어스타일, 얼굴털 또는 체모를 착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용인, 무급 인턴 또는 취업 지원자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고용인 또는 구직자가 직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추가 보호

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을 원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보호 및 용 절차
- 직원 또는 입사 지원자의 업무 외 및 직장 밖에서 대마초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보호

-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 가족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동거인, 부모, 시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또는 지정된 사람(혈연 또는 또는 가족과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게 최대 12주간의 직업 보호 휴가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특정 군사적 긴급 상황의 경우
-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또는 시부모)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직업보호사별휴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직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직업 보호 휴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료 제공자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출산 손실 사건(입양 실패, 대리 출산 실패, 유산, 사산 또는, 보조 생식 실패)후 최대 5일간의 직업 보호 휴가
- 내부 고발이나 CRD에 대한 불만 사항 고발을 포함하여 타인이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 신고 또는 도움을 주는 경우 보복에 대한 보호

소송/불만 제기

- 이 법은 직장에서 금지된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을 경험하는 개인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제책에는 고용, 전봉, 후봉, 승진, 복직, 휴전 명령, 전문가 증인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정서적 고통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면 CR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CR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차별/괴롭힘/보복 행위가 발생한 마지막 행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마지막 차별/괴롭힘/보복 행위 후 3년 이내 또는 만 18세 생일 후 1년 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차별, 괴롭힘, 보복을 당했다면
민권부(CRD)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민권부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무료 전화: 800.884.1684 / TTY: 800.700.2320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습니까? CRD는 귀하의 불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고용 및 주택법은 정부법 코드 섹션 12900-12999 성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규정은 규정집 제2부 제4.1호에 있습니다.

부법 12950항 및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 제목 2, 11023항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이 문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채용 사무실, 사원 게시판, 취업 대행 대기실, 연합 회관 등 직원들이 모이는 곳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이나 시설에서 10% 이상의 비영여 사용자로 구성된 고용주는 이 공지를 해당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